

등록번호	어르신청소년과-11288
등록일자	2015.3.24.
결재일자	2015.3.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아동청소년팀장	어르신청소년과 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안기민	이정근	이태목	조인동	03/25 문석진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代유병선 규제개혁팀장 김정현 주무관 김오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신설없음 원안동의 원안동의	

서 대 문 구
어르신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계획

청소년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캠페인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I

입법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확대)

II

추진배경

-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식 및 공감대확산
-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성 향상
-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근거마련

III

주요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
-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안 제6조 제1항)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안 제6조 제2항)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안 제9조 제1항)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안 제9조 제2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3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안 제14조)

IV

추진일정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5. 2. 2 ~ 2015. 2. 6
- 법제심사 : 2015. 3. 3 ~ 2015. 3. 18
- 입법예고 : 2015년 3월 ~ 2015년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5년 4월중
- 서대문구의회 상정 : 2015년 4월중
- 공포·시행 : 2015년 5월~2015년 6월

첨 부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